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RECAON SURVEYORS & CLAIM ADJUSTERS CO.,LTD

(우)08590 서울특별시가산디지털1로70,806,807호(가산동,호서대벤처타워)

본사 : TEL.02-757-9551

대전지사 : TEL.010-9445-3290

FAX.02-757-9563

FAX.0303-3445-3290

TO.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INVOICE

Report No : 2019-00778-01

수입일자 : 2019. 10. 24

제출일자 : 2020. 03. 19

	PARTICULARS	AMOUNT
농기계종합보험 '과병열' 손해사정 수수료 담당자 : 전배근 과장 증권번호 : 319-0566-4176-33	가. 손해사정 수수료 - 보험사기 적발건으로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수 청구 $\text{₩3,600만원} \times 5\text{배수} = 1.8\text{억} \times 2.2\% = \text{₩3,960,000}$	₩3,960,000
	나. 여비, 기타 - 일비 ----- ₩90,000 (1인 × 3일 × ₩90,000) - 교통비 ----- ₩32,300 (102km(왕복) ÷ 14km/ℓ × ₩1,480 × 3회 = ₩13,935) - 통행료 ----- ₩0 [0원 X 3회(왕복)] - 소계 ----- ₩122,300	₩122,000 (천원미만절사)
TOTAL		₩4,082,000

사업자등록번호	106-86-30223	예금주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거래은행	농협은행	계좌번호	301-0127-8380-51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이사 유상헌

리카온환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RECAON SURVEYORS & CLAIM ADJUSTERS CO.,LTD

(우)08590 서울특별시가산디지털1로70,806,807호(가산동,호서대벤처타워)

본사 : TEL.02-757-9551

대전지사 : TEL.010-9445-3290

FAX.02-757-9563

FAX.0303-3445-3290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자전거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

다시입력 + 경유지 길찾기 >

추천 이륜차우선 ?

55분 추천 51.8km

통행료 무료 · 주유비 7,326원 · 택시비 56,140원

계룡로 4.5km → 금산로 19.8km →
무금로 15.4km

55분
추천 51.8km

주유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p>1,503.81 (원/리터) <small>(2020.03.2주)</small></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p>1,319.08 (원/리터) <small>(2020.03.2주)</small></p>
--	--

1,480원/L 산정

11/5일: 피보험자 면담하여 사고조사 및 서류 징구함.

1/17일: 2차 출장하여 치료비 명세서 징구 및 자손(2) 보상기준 안내함.

3/09일: 3차 출장하여 비보험 사고조사 결과에 근거, 자손(2) 면책 안내함.

리카온 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RECAON SURVEYORS & CLAIM ADJUSTERS CO.,LTD

(우)08590 서울특별시가산디지털1로70,806,807호(가산동,호서대벤처타워)

본사 : TEL.02-757-9551

대전지사 : TEL.010-9445-3290

FAX.02-757-9563

FAX.0303-3445-3290

(1종)
888

[별표.1]

재물(1종)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3백만원 미만 및 면책건		500,000 (가산)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기본료	580,000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660,000 (항공항24기)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660,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012,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254,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1,87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2,88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4,40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5,8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8,0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0.89	12,7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82	17,80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73	24,60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6,500,000 + 50억원 초과금액 × 0.4% 가산
100억원 초과		56,500,000 + 100억원 초과금액 × 0.2% 가산

리카온환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RECAON SURVEYORS & CLAIM ADJUSTERS CO.,LTD

(우)08590 서울특별시가산디지털1로70,806,807호(가산동,호서대벤처타워)

본사 : TEL.02-757-9551

대전지사 : TEL.010-9445-3290

FAX.02-757-9563

FAX.0303-3445-3290

- 조사경력은 해당 보종의 업무처리 경력기준으로 한다.
- 일당은 별도 지급한다.
- 보수 5백만원 초과시 보험자와 별도 협의 후 산정한다.

6. 보험사기 조사건 성과급

○ 대상 및 지급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우수조사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위장사고, Moral 사고 입증 (단, 청구포기 청구 및 객관적인 조사과정 결과 근거로 함)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보험사기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일건, 구속, 기소되어 형사판결 또는 민사판결로 보험사기 확정된 건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10~20배 사이의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리카온 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RECAON SURVEYORS & CLAIM ADJUSTERS CO., LTD.

<본사> 서울시 가산디지털로1로 70, 806, 807호

Tel : 02)757-9551 / Fax : 02)757-9563

E-mail : sonsa2@recaon.com

<대전지부> Tel : 010)9445-3290 / Fax : 0303)3445-3290

<호남지부> Tel : 010)6428-4225 / Fax : 0505)369-4225

<부산지부> Tel : 051)714-1156 / Fax : 0505)462-9558

<대구지부> Tel : 010)2299-6635 / Fax : 053)247-6455

Report No. 2019-00778-01

Date. 2020. 03. 24


수 신 : NH농협손해보험(주)


참 조 : 정책보험단 정책보험지급부 (담당 : 전배근 과장님)

제 목 : 농기계종합보험 “**피보험자_곽병열**” 종결보고서(면책)

증 권 번 호 : 319-0566-4176-33 [사고번호 : 201910-0112944]

귀사의 손해사정업무 위임에 의거 2018년 10월 05일(18:00)경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번지 부근에서 발생한 피보험자 “**곽병열**”의 자기신체사고(II) 특별약관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종손해사정사 : 이 재 화 이사 

책임조사자 : 노 승 일 이사 
(Mobile : 010-9445-3290)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이사 유 상 현 

1. 보험계약사항

- 가. 보험종목 : 농기계종합보험
- 나. 증권번호 : 319-0566-4176-33
- 다. 보험계약자 : 곽병열 [580920-1*****]
- 라. 피보험자 : 곽병열 [580920-1*****]
- 마. 소재지 :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
- 바. 보험기간 : 2019. 03. 31 - 2020. 03. 31
- 사. 보험목적물 : 자기신체사고(II) 특약
- 아. 사고일시 : 2019년 10월 05일 (18:00)
- 자. 사고장소 :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번지
- 차. 사고원인 : 피보험자 부주의로 인한 상해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손해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자손(II) 부상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면책
자손(II) 장해	100,000,000	100,000,000	26,683,680	0	면책
합계			36,683,680		

주1) 자기신체사고(II) 특별약관 가입건으로 농기계종합보험약관상 제2조(피보험농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에 근거하여 “면책” 사고임.

※자기신체사고 (2) 특약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해구분 : 4급 27항

①진단명 : “우측주관절요골두, 척골구상들기골절, 우측완관절요골원위부골절로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인공요골두치환술 시행함”

②장해율 : 인공치환술 등 시행으로 영구장해 26.05% 예상됨.

총괄표란에 회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



2. 보험계약사항

구 분	내 용	계약사항검토	비 고
보험종목	농기계종합보험	일치	-
증권번호	319-0566-4176-33	일치	-
계약자	곽 병 열 [580920-1*****]	일치	-
피보험자	곽 병 열 [580920-1*****]	일치	-
소재지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	일치	-
보험기간	2019. 03. 31 - 2020. 03. 31	일치	*사고일자 : 2019.10.05 *보험기간 內 사고임.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상해등급: 4급27항		
	구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자손 II 부상	10,000,000	0
자손 II 장해	100,000,000	0	-
보험조건	농기계 손해 /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 <u>자기신체사고 II</u>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일치	-
타보험계약	없 음	-	-

3. 일반사항

가. 피보험자 관련사항	
성 명	곽 병 열
주 민 번 호	580920-1*****
직 업	농업
주 소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
업 태 / 종 목	-
기 타 사 항	연락처 : 010-9000-4771

나. 피해자 관련사항				
성 명	곽 병 열	직 업	농업	
주 소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			
피 해 사 항 (자 손 II 특 약)	진 단 명	우측 주관절요골두 및 척골구상돌기골절 외측 축부인대파열 및 우측 완관절요골원위부골절		
	치 료 병 원	대전성모병원	진단기간	2019.10/5~10/12 (12일 입원)
			치료기간	
		대전성모병원	진단기간	2019.12/9~2020.1/17 (7일 통원)
			치료기간	
		진단기간		
	치료기간			
치 료 내 용	2019.10.07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인공요골두 치환술 시행함			
내 원 경 위	사 고 내 용	피보험자 진술에 의하면 2019년 10월 05일 트랙터 짐실는 곳에서 하차중 발을 헛짚어 넘어지면서 우 측 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함		
	대전성모병원	상기 사고로 10월 05일 내원하여 수술 치료함		
	과거치료유무	없음		

4. 사고사항

가. 사고개요	
사 고 일 시	2019년 10월 05일 (18:00)
사 고 장 소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번지 논 부근
사 고 원 인	피보험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사고
사 고 경 위	<p>1.피보험자(곽병열)의 진술에 의하면 경작지 논에서 트랙터농기계로 작업을 마치고 조수석으로 내리던 중에 부주의로 도로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우측 주관절 및 완관절 등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함.</p> <p>2.입원초진차트 기록에 의하면 농기구 짐실는 곳 1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손목을 땅에 뒀다가 다친 사고로 기록되어 있음.</p>
사 고 조 사 내 용	<p>1.피보험자(곽병열)의 부상정도가 우측 완관절, 주관절이 심하게 골절된 상태로서 사고현장 및 사고트랙터를 확인한 바 피보험농기계는 35HP의 작은 트랙터이며 조수석에서 지면까지의 높이가 약 70cm 정도로서 실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낮은 높이로 상기의 진단명에 이르는 사고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비보험사고(위장사고) 유무에 대하여 집중 조사함.</p> <p>2.사고현장은 산간지대에 있는 논, 밭 부근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탐문조사하였으나 사고당시 목격자를 찾지 못하였고 주변에 CCTV도 없는 상태로서 사고以後 피보험자를 최초로 면담한 119구급대원을 조사하기로 함.</p> <p>3.피보험자에게 입원초진차트 및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구급대원(박영열 010-3863-5618)과 통화를 시도하여 최초 출동했던 현장상황을 청취한 바 피보험자는 사고현장이 아닌 집안 방안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어떻게 다치셨나요? 라고 질문하자 트랙터 짐실는 곳 약 1m 높이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트랙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고 트랙터가 집주변에는 보이지 않았으며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초 신고할 당시에는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였으며 이 내용은 녹취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피보험자에게 119 통화기록에 대한 녹취록 제출을 요청함.(구급대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사고조사자가 녹취하여 별첨하였음)</p> <p>4.피보험자측에서는 녹취록 제출에 대해 번거로움을 주장하며 협조가 지연되면서 마을주민의 목격자확인서로 대체하여 줄 것을 당사에 요청하였으나 불가함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119 구급요청당시 통화기록에 대한 녹취록 제출을 재차 요청함.</p> <p>5.2020년 3/9일 피보험자를 3차 면담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전달받아 확인한 바 119신고접수 통화내용에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차 질의하자 피보험자의 부인이 경황이 없어 119에 잘못 전달하였다고 하며 계속 부인하였음.</p> <p>6.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II 특약 제2조 내용에 근거하여 금번 사고는 피보험농기계의 운행中 사고가 아닌 사다리작업中 부주의에 기인한 상해로서 비보험사고에 해당되어 면책임을 안내함.(부지급안내문 발송)</p>

나. 손해상황 (2-1)



사고현장 전경



피보험농기계(트랙터)



피보험자 소유 트랙터(35HP) 확인



조수석으로 하차中 추락 주장



피보험자(곽병열) 우측 주관절 CAST 상태

나. 손해상황 (2-2)



피보험자 트랙터 기대번호 : 8353015414(면세유류대장과 일치)



피보험자(곽병열) 주관절 & 완관절 운동범위(각도) 확인



완관절 수술부위



주관절 수술부위

5.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여부

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면 / 부 책	면책
판 단 근 거	<p>1. 피보험자가 트랙터로 경작을 마치고 내리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고로 주장하였으나 사고조사결과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부주의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고”로 확인됨.</p> <p>2. 자기신체사고 II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금번 사고는 피보험농기계와 무관한 사다리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서 상기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피보험농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기신체사고(II)는 면책임.</p> <p>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항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장치란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금번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농기계(트랙터)와 전혀 무관한 <u>사다리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119 구급당시 녹취내용상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면책 사고임.</u></p>
관 련 법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신체사고(2) 특별약관 제2조 1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2항

다. 보험금 지급책임	
면 / 부 책	면책
판 단 근 거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트랙터를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와는 무관한 “사다리 작업中에 부주의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고로서 농기계종합보험의 자기신체손해(II)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최종 면책 안내함.

라. 구상권 성립 여부	
본 건은 제3자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구상권의 성립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손해액 평가

가. 평가기준	
① 손해액	위장사고(비보험사고 적발) 연책
② 과실상계	해당 없음

나. 평가결과

손해액산출내역		(단위 : 원)			
치료기간	치료 내용	청구금액	손해사정	비고	
19.10.5~10.12	수술& 보존적 치료	2,492,880	0	입원 12일	
19.12.9~20.1.17	통원치료	83,830	0		
① 적극손해 - 합계		2,576,710	0		
② 위자료	1,600,000원	1,600,000	0	장해율 20~27%	
③ 휴업손해	₩2,603,587	885,210	0	입원 12일	
	₩2,603,587/30일X12일 X0.85= ₩885,210				
④ 그 밖의 손해배상금	7회 X 8,000원	56,000	0	통원 7일	
⑤ 장해상실수익액	2,723,025X26.05% X37.6172= ₩26,683,680	26,683,680	0	심사전 4/1일 기준임	
⑥ 향후 치료비	핀제거비	금속내고정물제거수술비용	2,502,040	0	추정서 첨부
	성형비	반흔교정성형비용	4,485,000	0	"
합 계	①+②+③+④+⑤+⑥	38,788,640	0		
지급보험금			연책	비보험사고	

- ① 대전성모병원 치료비명세서, 입원초진기록, 수술기록지 첨부함.
- ② 예상 장해율: 인공치환술 시행으로 주관절 15%, 완관절 13%(자료첨부) 영구장해 예상됨.
 $(100-15%) * 13% + 15% = 26.05%$
 $\text{취업가능월수} : \text{농촌정년 65세로 4/1일 장해진단 기준 41개월(L계수: 37.6172) 남음.}$
- ③ 금속물 제거비용 및 성형수술 향후치료비 추정서 첨부함.
- ④ 피보험자는 현재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확인결과 농업종사자로 확인됨

다. 평가 내역 요약

구 분	청구금액	지급금액
자기신체(2) 특약	38,788,640	0
/	/	0
합계	38,788,640	면책

7. 구 상

- 해당 없음

○ 청구유형

중분류	소분류
인과관계 불인	인과관계 불인
위장사고 면책	위장사고 면책
일부보험	일부보험
지분상속	지분상속
일반배상감액	장해감소
	기왕증감액
	치료비 조정
	과실상계 합의금 조정(감소)
과다청구	일반피해과장
	일반(재불, 배상)과장
	편승수리

[별첨]

순서	내용	매수
1	보험금청구서, 문답확인서 외	13부
2	사고처리과정표, 부지급안내문 외	21부

본 손해사정 보고서는 당사의 양식과 최선의 노력으로 이해 당사자 어느 일방에도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명백히 합니다. [끝]

■ 사고처리 과정표

1. 일 반 사 항

보 험 종 목	농기계종합보험	사 고 일 시	2019년 10월 05일
계 약 자 명	곽 병 열	보험회사담당자	전 배 근 과장님
조 사 자	㈜리카온손해사정/노승일	사 고 번 호	201910-0112944

2. 처 리 과 정

처 리 일 자	처 리 항 목	처 리 내 용
2019년 10월 24일	손해조사 수임	
24일	피보험자 유선안내(사고내용 확인)	사고내용 및 계약 면/부책 설명
25일	피보험자 면담하여 보상절차 안내	1차 면담, 관련서류 징구
29일	현장보고서 제출	
2019년 11월 08일	119 녹취기록 제출 요청	모럴리스크 관련 사고조사
25일	구급활동일지 징구함	사고접수내용 확인
2019년 12월 23일	119 녹취기록 제출 재안내	
2020년 01월 17일	피보험자 면담하여 치료비명세 징구	2차 면담, 중간치료비 안내
17일	사고장소 부근 주민대상 사고조사	사고당시 목격자는 찾지 못함
2020년 02월 11일	119 녹취기록 제출 재안내 독촉	
2020년 03월 09일	피보험자 면담하여 119녹취록 징구	3차 면담, 비보험사고 면책 안내
16일	부지급안내문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발송& 전화안내 완료
19일	최종보고서 발송	

상기와 같이 의뢰받은 사고에 대하여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고처리 과정표를 제출합니다.
[끝]

안 내 문

수 신 : 광영일 귀하(010-9000-477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 (우)55500
발 신 : NH농협손해보험 농협정책보험팀 전대근 과장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우)03740
제 목 : 농기계보험 처리결과 안내문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10월 05일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30번지 부근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귀하가 청구한 자기신체사고(II)와 관련하여 본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2항 및 농기계종합보험약관상 제2조 1항(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농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에 근거하여 연책처리 등을 안내드립니다.

▶ 피보험농기계의 운행중 사고유무

-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불문하고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장치란 당해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유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19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상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다리 작업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본 사건 상해는 자기신체사고(II) 약관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 03월 16일

NH농협손해보험(주)

이 우편물은 2020-03-16
제 330500200386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대전갈마동우체국장

대한민국 NH농협